

1998. 11. 12
제81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천)

순 서

- 행정구역(법정동 및 자치구간)경계변경계획 의견요청안 --- 2
- 광주광역시서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 ----- 7
- 광주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10

행정구역(법정동 및 자치구간)경계변경계획 의견요청안

■ 현 황

-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 유입 등 인위적인 생활권의 변동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법정동 및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하고자 함.

■ 경계변경 대상지역

- 법정동간 경계변경 대상 : 94필지 885,774m²
 - 쌍촌동에서 유촌동 (18필지 60,039m²)
 - 내방동에서 광천동 (6필지 587m²)
 - 화정동에서 내방동 (7필지 13,475m²)
 - 내방동에서 화정동 (30필지 5,164m²)
 - 광천동에서 농성동 (10필지 6,536m²)
 - 농성동에서 광천동 (5필지 178m²)
 - 화정동에서 쌍촌동 (18필지 2,795m²)
- 자치구간 경계변경 대상 : 18필지 121,399m²
 - 서구 광천동에서 북구 임동 (5필지 117,105m²)
 - 남구 주월동에서 서구 풍암동 (13필지 4,294m²)

■ 법정동간 경계변경 조정사유

-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 유입 등 인위적인 생활권의 변동과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등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로 건축, 우편물 송달, 재산권 행사 등에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법정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 쌍촌동 1171외 17필지는 유촌동으로, 송원학원 인근 내방동 197-1 외 5필지는 인접동인 광천동으로, 화정동 686-16 외 3필지와 화정동 88-3 외 2필지는 내방동으로, 내방동 292-1 외 6필지와 내방동 307-20 외 3필지 및 내방동 310-4 외 18필지는 화정동으로, 광천동 31-6외 9필지는 농성동으로, 농성동 611-9외 4필지는 광천동으로, 화정동 506-3 외 17필지는 쌍촌동으로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 자치구간 경계변경 조정사유

-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 수행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 광천동 782-376 외 4필지 (117,105㎡)는 주민이 거주치 않는 광주천 하천부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지역 안에 존치되고

있어 자치구간의 경계가 산만하여 광주천과 도로를 기점으로 서구 광천동에서 북구 임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 남구 주월동 산122-1 외 12필지 (4,294㎡)는 풍암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구내 1필지에 2개 자치구간 관할구역이 병존하여 토지이용, 재산권 행사 등에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 예상되어 도로를 기점으로 우리 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변경)1항 및 3항에 의거 법정동·자치구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안으로
-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변동은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고, 택지개발,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생활권이 불편한 쌍촌동 1,171번지 외 93필지(885,774㎡)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하기 위함.
- 자치구간 경계변경으로 광천동 782-376 외 4필지는 광주천 둔치 및 도로로 북구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며, 남구 주월동 산122-1 외 12필지는 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도로와 근린공원지역을 우리 구로 편입하여 토지이용, 시설물관리 등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임.

- 위의 법정동간·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청안은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됨.
- 금번 법정동 경계변경 구역 이외도 인근토지의 경계가 불합리 하여 조정이 꼭 필요함에도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해 조정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많은 주민 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